

국제대학원 내규

시행: 2024. 10.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이하 “대학원학칙”이라 한다)」 및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전문지식과 소양교육, 국제감각의 배양, 문제해결능력의 제고, 지도자적 자질의 함양을 통해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갈 비전을 지닌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설치과정 및 학과, 전공)

-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 박사 학위과정과 학과, 전공, 학위명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본 대학원은 비학위 과정으로 연구과정과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제2장 학사운영위원회

제4조(학사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 간사는 부대학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5인 이상으로 본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입학전형위원회, 장학사정위원회, 교원인사소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기타 본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입학 및 등록

제7조(입학전형위원회)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위원회는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학과장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입학전형방법)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배점 비율과 심사방식 등 세

부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② 입학전형 지원자의 구비서류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전형 당시 해외에 거주하는 자 또는 입학전형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전화면접 또는 온라인면접만으로 전형할 수 있다.

제9조(입학금 및 수업료) 입학금 및 수업료는 등록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3] 의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 혹은 재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11조(수업연한 이후의 등록금) 수업연한이후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12조(연구등록) ① 연구등록이라 함은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학위를 취득할 때 까지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등록하는 제도로 연구등록금은 1회에 한하여 해당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로 한다.

- ② 연구등록을 한 자는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며, 도서관 및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교시설 등을 정해진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다.
- ③ 연구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료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4장 학기·수료요건·성적

제13조(학기) ① 본 대학원은 1년 2학기제로 운영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석사학위과정,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및 위탁교육과정은 1년 3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본 대학원은 별도의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4학기로 한다. 단,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석사과정의 조기졸업이 가능한 경우
2.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경우

제15조(수료 및 수료학점) ① “수료”라 함은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② 본 대학원 수료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45학점

(단, 국제통상협력학과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산업 및 무역정책 전공은 42학점,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컨설팅 전공은 36학점, 국제개발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전공은 24학점, 환경·지속가능개발 전공은 42학점, 국제경영학과 국제농식품경영 전공, 국제인적자원경영 전공은 36학점)

2. 박사과정 36학점

3. 위탁교육과정 36학점

제16조(학점취득)

① 석사과정은 학기당 12학점까지 취득가능하나, 직전학기 평점이 4.0이상이거나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고(다만, 국제통상협력학과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산업 및 무역정책 전공, 국제개발협력학과 환경·지속가능개발 전공은 직전학기 평점에 관계없이 18학점까지 취득 가능), 학·석사 연계과정은 15학점까지,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취득 가능하다. 다만, 학점인정으로 인한 취득학점은 예외로 한다.

② 한국어 과목은 수료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환경·지속가능개발 전공에 한하여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학점의 인정) ① 본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외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 석사학위과정 6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점 이내에서 학위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과장의 심의 후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적 또는 자퇴 후 타 학과로 입학한 자가 제적 또는 자퇴 전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과장의 심의 후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글로벌 콜래버레이션 서머 프로그램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의 취득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제18조(필수과목 이수면제) ① 본 대학원 필수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경우 필수과목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② 필수과목 이수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필수과목 이수면제 신청서를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해당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본 대학원장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필수과목 면제가 수료학점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료학점은 동일하다.

제19조(선수학점) ① 특수대학원 졸업생으로서 유사전공(학과) 또는 타전공(학과) 졸업자는 학위과정별 수료학점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수학점을 선수과목으로 취득(D- 이상)하여야 한다.

1. 유사전공(학과) 졸업자 : 6학점

2. 타 전공(학과) 졸업자 : 12학점

② 선수학점 교과목은 본교 국제대학원에 개설된 강좌만 가능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소정의 학점 인정서에 학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선수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선수과목은 취득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학위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본 대학원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선수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학업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교과목별로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의 평점별 분포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하되, 박사과정생, 교환학생, 위탁교육생, 졸업예정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 Ao : 수강생의 40% 이내
2. A-, B+ : 수강생의 40% 이내
3. Bo 이하 : 수강생의 20% 이상

제5장 학적변동

제21조(휴학) ①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병역의무 이행(병역의무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해외파견(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외출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전근(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인사발령지 또는 인사팀 확인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4. 임신 또는 출산(최대 2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질병 또는 사고(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④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 당해 학기에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 단, 의무복무에 한함
 2.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3.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해외파견 및 전근의 경우

제22조(복학)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본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4. 성적경고를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은 자

제6장 학위취득조건·조기졸업·전공시험

제24조(학위수여) ①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서 정한 수료학점 취득
- ② 석사과정생이 수업연한 내에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논문학점으로 3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③ 정부 용역사업 과정에 따른 석사학위 취득 요건은 사업지침에 따른다.
- ④ 본 대학원의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에서 정한 수료학점 취득
 2. 전공시험 통과

3. 학위 논문 심사 통과
4. 학술지 논문 게재

제25조(석사과정 조기졸업)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4.0이상이고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는 수업연한 4개 학기 중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② 2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는 3학기 수강신청 시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조기 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원 석사교과과정(학위논문, 교환학생, 인턴십 등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제외)으로 취득한 학점이 최소 36학점 이상일 경우에만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④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은 조기졸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6조(박사과정 전공시험) ① 수료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학기 수료학점 취득예정자는 전공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② 전공시험은 학과에서 지정한 4과목 이상에 대해 필기 또는 구술시험의 형태로 학기당 1회 실시된다.
③ 시험의 응시기회는 과목당 3회로 제한한다.

제7장 학위논문

제27조(학위지도교수의 선정) ① 석사학위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작성자가 해당 교수와 협의하여 3기에 정한다.
② 박사학위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작성자가 해당교수와 협의하여 전공시험통과 후에 정한다.

제28조(학위청구논문의 작성) 학위논문은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논문공개발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공 개발표에 합격한 경우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 학기 동안 그 효력을 인정한다.
② 공개발표의 심사자는 학과장,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학위지도교수는 공개발표 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공개발표 종료 1주 이내에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개발표의 합격은 심사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0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 해학기에 취득할 예정이고, 논문공개발표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시험과 논문공개발표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제3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제출 승인서
2. 학위논문평가서
3. 성적증명서
4. 심사용 논문 (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② 학위청구논문은 매학기 본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한다.

- ② 학위논문심사위원은 관련학과 본교 전임교원 또는 국내·외 학자 중에서 학위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③ 학위주심교수는 심사위원의 합의를 거쳐 선정하되 학위지도교수는 제외하며, 심사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제33조(논문심사)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② 학위논문 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논문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논문심사 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학위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2회까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동일한 학기에 재심사를 할 수 없다.)
- ④ 학위주심교수는 학위논문평가서를 작성하여 본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논문제재의무) ①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후보)지 또는 SSCI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논문은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 ③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 논문은 본 대학원 입학일 이후 본교 또는 본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8장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제35조(용어의 정의) “복수학위제”라 함은 본 대학원과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양교의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6조(지원자격) ① 복수학위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2학기 이상 이수,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신청학기 평점이 3.5 이상인 자
 3. 해당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을 갖춘 자
 4.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② 외국대학이 인정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7조(선발시기 및 제출서류) ① 본 대학원은 복수학위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선발절차 및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② 복수학위 과정 지원자는 행정실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학점인정) ① 복수학위 과정 중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과장의 심사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외국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학과장이 정한다.
- ③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수는 본 대학원의 주당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환산하며, 성적은 학과장이 급제(P) 또는 낙제(N)로 부여한다.
- ④ 본 대학원 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최대인정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39조(수학기간) ① 복수학위 과정 이수학생의 외국대학 수학기간은 2개 학기(1년)로 한다. 다만, 양교 간 교육과정의 차이 또는 언어연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본 대학원 학생이 복수학위를 이수하는 경우, 외국대학 수학 중 1회(1개 학기)에 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으며 외국대학에서의 휴학 기간은 본교 휴학기간에 포함한다.

제40조(장학금 지급, 등록금 납부 및 학위수여) ① 복수학위 과정 이수학생은 본 대학원 및 해당 외국대학의 등록절차에 따라 매학기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본 대학원은 복수학위 과정 이수학생에게 외국대학 수학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은 외국대학 수학직전학기에 본 대학원에서 결정한 장학등급에 따른다. 단, 기숙사 지원금은 장학금에서 제외한다.

③ 복수학위 과정 이수학생은 본 대학원과 외국대학의 양교 교육과정 규정에 따라 졸업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복수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④ 복수학위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경우 복수학위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졸업유예 기간동안 제2항의 장학등급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 할 수 있다.

⑤ 외국대학 학위 취득에 실패할 경우 복수학위 과정생은 교환학생으로 간주하여 학사 및 제반 행정처리를 수행한다.

제41조(규정 준수) ① 복수학위 과정 이수학생은 본 대학원과 외국대학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 또는 본교 제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복수학위제 관련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9장 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제42조(교환학생) ① 교환학생(Exchange Student)이란 해외대학(자매대학 포함)에서 교과목을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② 선발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수학기간 동안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할 수 없다.

⑤ 교환학생 파견 기간에 관계없이 본 대학원에 3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제43조(수업료 및 학점인정) ① 교환학생은 수학기간 중 수업료를 본 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등급은 수행 직전 학기의 장학등급을 적용한다.

② 교환학생 자격으로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

1. 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 내규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과목의 개설여부에 관계없이 전공 또는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교환학생으로서 취득한 학점을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과장의 심사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과장은 수강 교과목의 이수구분 및 학점수를 본 대학원의 소속전공 및 학기당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교환학생의 이수 교과목에 대한 성적은 급제(P) 또는 낙제(N)로 부여한다.

제10장 장학금

제44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등)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며, 교내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예외적으로 장학사정위원회에서 감면액을 조정할 수 있

다.

② 교외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에는 장학사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지급대상자를 본 대학원에 위탁한 교외장학금의 경우 장학사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급대상자를 정한다.

제45조(장학금 신청) ① 장학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학사정위원회에서 장학등급을 정하여 지급한다.

② 신입생의 장학금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입학시험 성적으로 장학등급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46조(장학금지급 제한 및 지급기한) ① 장학금은 동일인이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장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학금지급은 석사 및 박사과정에 한하며,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석사과정의 장학대상자는 직전 학기에 9학점, 박사과정은 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다만, 한국어, 영어작문과 연구(English Writing and Research) 강좌와 급제(P)로 취득한 학점은 본항의 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장학사정위원회는 직전 학기 평점, 공인 영어시험 성적, 연구보조 활동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장학금의 지급기한은 학기제로 한다.

제11장 인턴십·연수

제47조(인턴십과 인턴십신청서) ① 인턴십(Internship)이란 국내·외의 정부, 기업, 연구소, 국제기구 등에서 4주 이상을 유·무급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인턴십과 관련된 제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8조(연수 자격 및 횟수)

① 연수(Training Program)란 국내·외의 정부, 기업, 연구소, 국제기구 등 외부기관 및 본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연수에 대한 제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2장 학·석사 연계과정

제49조(학·석사 연계과정의 정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함은 본교 학사학위과정과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50조(수업연한)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총 5년 이상으로 학사학위과정 3.5년, 석사학위과정 1.5년 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경우 학사학위과정 3.5년, 석사학위과정 1년(3학기) 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지원자격 및 신청) ① 학·석사 연계과정의 신청 시기는 본 대학원 입학원서 접수시기와 동일하다.

②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학하여 3학년 1학기 이상 이수 또는 이수예정자로 졸업학점의 2/3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2. 이수학기까지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③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제출 시 지도교수 추천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전형방법) ①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는 본 대학원 입시 일정과 전형절차에 따른다.
② 전형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3조(모집인원) 학·석사 연계과정 모집인원은 연간 20명 이내로 한다.

제54조(학점인정)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는 본 대학원 전공과목을 학부 졸업 시까지 최소 6학점에서 최대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수학점은 석사과정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된다.

제55조(등록 및 휴학) ①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학부졸업 즉시 본 대학원에서 발부한 등록고지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한 후 첫 학기는 군입대, 병가 및 출산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제56조(학·석사 연계과정 입학자에 대한 혜택) 입학 첫 학기에 등록금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제공하며 입학금을 면제한다.

제13장 위탁교육

제57조(위탁교육) 본 대학원은 대학원학칙 제12조에 근거하여 기업체 등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위탁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제58조(위탁교육의 운영) 위탁과정의 입학전형, 지원자격, 이수학점 및 과정운영 등의 제반사항은 위탁 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9조(등록금 등) 위탁학생의 등록금 및 제 경비는 본 대학원 등록금과는 별도로 정한다.

제14장 보칙

제60조(강사료 및 제수당) 각 과정의 강사료 및 제수당은 본 대학원장이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61조(준용)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내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당시의 학칙 및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및 제11조는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3항은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2004학년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2005학년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구교육과정과 신교육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제3조(위탁교육과정 학기당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위탁교육과정 학기당 이수학점에 대한 변경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4조(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1조 및 제44조는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7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본 내규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컨설팅 전공의 Strategic Project Report I 및 Strategic Project Report II 과목은 제17조, 제21조에서 정하는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조 2항, 제16조 2항, 17조 1항 및 2항, 21조 1항의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에 대한 사항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 4항 및 5항 2015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에 대한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학위수여) 1항의 개정규정은 본 내규 시행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1항, 제16조 1항, 제25조 1항, 2항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제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학과·전공·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과정	학과	전공	학위종별	입학정원
석사학위	국제통상협력학과	-국제통상협력학전공 -한국개발경험 및 경제협력 전공 -산업 및 무역정책 전공 -국제통상 및 투자 전공	국제통상협력학석사	42명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협력학 전공 -국제개발컨설팅 전공 -국제개발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전공 (온라인 학위과정)* -탄소중립 에너지융합 전공	국제개발협력학석사	
		-환경 · 지속가능개발 전공	환경 · 지속가능개발석사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학전공 -동아시아학전공	국제관계학석사	
박사학위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전공 -국제농식품경영전공 -국제인적자원경영전공	국제경영학석사	10명
	국제통상협력학과	-국제통상협력학전공 -한국경제학전공	국제통상협력학박사	
	국제개발협력학과	-국제개발협력학 전공 -탄소중립 에너지융합 전공	국제개발협력학박사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학박사	
	국제경영학과		국제경영학박사	

*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함

[별표2] 교내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감면액

장학종류	장학등급	감면액	참고사항
국제 전문 인력 양성 장학	1급	등록금액 전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금 감면액 중 수업료 외 입학금과 자치회비 등은 제외한다. 본 장학의 수혜자는 연구보조활동 및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2A급	등록금액 75%	
	2B급	등록금액 50%	
	2C 급	등록금액 25%	
목련 장학 (가계곤란 장학)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수업료의 25% ~100% 범위에서 감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액은 매학기 장학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학기별로 선발하며 최대 2개 학기까지 장학수혜가 가능하다.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장학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별표3] 등록금의 반환기준 (제10조 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등록금 반환 발생일은 재학생의 경우에는 신청일, 휴학생의 경우에는 휴학기간 중 최초 휴학신청일 기준으로 하며 상기 제2호에서 정한 [반환사유 발생일]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평일을 해당 기간의 말일로 한다.
4.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 학력사항 또는 입학관련 서류의 위·변조 등으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은 반환하지 않는다.